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6918 제안연월일 : 2024. 12.

제 안 자 : 행정안전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 발의자	발의일	심 사 경 과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건영의원 (2204653) 원건영의원 (2204653) 원건성의원 (2204654)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24.11.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회부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4.12.17.) 상정/축조심사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4.12.18.) 상정/축조심사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4.12.18.) 상정/축조심사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4.12.19.) 상정/의결(대안반영폐기)		
	, _	2024.10.11.	「국회법」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 제1소위에 직접 회부(24.11.28.)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24.12.17.) 상정/축조심사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24.12.18.) 상정/축조심사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24.12.19.) 상정/의결(대안반영 폐기)

용혜인의원 (2205295)	2024.11.6.	「국회법」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 제1소위에 직접 회부(24.11.28.)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24.12.17.) 상정/축조심사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24.12.18.) 상정/축조심사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24.12.19.) 상정/의결(대안반영 폐기)
이달희의원 (2205301)	2024.11.6.	「국회법」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 제1소위에 직접 회부(24.11.28.)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24.12.17.) 상정/축조심사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24.12.18.) 상정/축조심사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24.12.19.) 상정/의결(대안반영 폐기)
양부남의원 (2205337)	2024.11.7.	「국회법」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 제1소위에 직접 회부(24.11.28.)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24.12.17.) 상정/축조심사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24.12.18.) 상정/축조심사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24.12.19.) 상정/의결(대안반영 폐기)
정춘생의원 (2205370)	2024.11.7.	「국회법」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 제1소위에 직접 회부(24.11.28.)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24.12.17.) 상정/축조심사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24.12.18.) 상정/축조심사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24.12.19.) 상정/의결(대안반영 폐기)

		,
신정훈의원 (2205476)	2024.11.12.	「국회법」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 제1소위에 직접 회부(24.11.28.)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24.12.17.) 상정/축조심사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24.12.18.) 상정/축조심사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24.12.19.) 상정/의결(대안반영 폐기)
박용갑의원 (2205774)	2024.11.21.	「국회법」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 제1소위에 직접 회부(24.11.28.)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24.12.17.) 상정/축조심사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24.12.18.) 상정/축조심사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24.12.19.) 상정/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12.19.)는 위 8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4.12.23.)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8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마련한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고, 분야별 교부 비율 등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 분야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교부될 수 있도록 분야별 교부 금액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 분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방 분야로 교부하도록 법률에 명 시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 법률 제 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4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본문 중 "소방 및"을 각각 "소방시설 및"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소방안전교부세"를 "제1항제1호의 금액"으로,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부분"을 "1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다.

- 1.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 시설(소방 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확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 목적: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 2.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목적: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9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제9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① ----- 다음 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 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 호의 구분에 따라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 화 등을 위하여 소방안전교부 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 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 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 교부하여야 한다. <신 설> 1.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시설(소방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확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 목적: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 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 액의 100분의 40 이상에 해당 하는 금액 <신 설> 2.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시설 확 충 및 안전관리 목적: 「개별 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 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 0분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금 액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 세의 교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소방 및 안전시설 투 한황, 소방 및 안전시설 투자 소요,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노력,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소방안전교부세 중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방 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여야한다.

②
<u>소방시설 및</u>
<u>소방시설 및</u>
<u>ন</u>
1항제1호의 금액
<u>100분의 25</u>
에 해당하는 부분
<u>.</u>